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5738
등록일자	2016.4.18.
결재일자	2016.4.19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예산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
신경하	김정현	임근래	04/19 조인동
협 조	주민자치국장 김중두		

## 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계획



서대문구  
정책기획담당관

# 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계획

2015 회계연도 우리구 수입증대와 지출절약에 노력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.

## 01. 심 사 근 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,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~ 제54조의2
- 「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」

## 02. 예산성과금 신청현황

(단위:천원)

연번	부서명	신청자	사 업 명	유형	절약액 (증대액)	성과금 신청액	자체심사 결과	
							심사의견	조정액
1	자 치 행정과	최선희 외 2명	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	지출절약 (주요사업)	190,000	3,500	적정 (격려금)	3,500
2	전 산 정보과	심화성 외 2명	전화 전용회선 운영 공공요금 절감	지출절약 (경상경비)	13,304	6,600	적정 (격려금)	3,000
3		김영진 외 2명	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 (외부자원 활용)	지출절약 (주요사업)	16,414	3,300	적정 (격려금)	1,500
4	재무과	민태일 외 4명	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승소로 구유지 재산권 확보	수입증대	679,337	6,700	적정 (격려금)	6,700
5	어르신 복지과	이현돈	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(사용료 수입)	수입증대	7,600	660	적정	380
6	청 소 행정과	김응식 외 1명	신규 공동주택 개별계량 기기 (RFID) 설치비용 절감	지출절약 (주요사업)	143,500	3,500	적정 (격려금)	3,500
7	건 설 관리과	송유정	간판개선 시범사업	지출절약 (주요사업)	202,000	3,500	적정	3,500
8		박선옥	국공유지 일제조사	지출절약 수입증대	14,776	1,470	적정	1,470
9	푸 른 도시과	최보리	기업·학교·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벚꽃책방 조성사업	지출절약 (주요사업)	30,500	3,050	적정	3,050
10		김수진 외 1명	창천문화공원 정비	지출절약 (주요사업)	26,000	2,600	적정	2,600
11	교 통 관리과	박희연	공영주차장 관리	지출절약 (주요사업)	37,420	3,742	적정	3,742

### 03. 심 사 개 요

#### 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2016. 4. 19.(화) 14:00 ~
- 장 소 : 부구청장실
- 참석대상 : 심사위원 및 예산성과금 신청 관계 공무원(※필요시 배석)
- 심사위원회 구성

연번	구 분	성 명	소속 및 직위	비 고
1	위 원 장	조 인 동	부 구 청 장	
2	부위원장	김 종 두	주 민 자 치 국 장	※ 안전건설교통국장 겸임
3	위 원	오 남 희	경 제 재 정 국 장	
4	위 원	오 제 성	복 지 문 화 국 장	
5	위 원	황 도 현	환 경 도 시 국 장	
6	위 원	김 종 두	안전건설교통국장	※ 직무대행
7	위 원	정 옥 진	구 의 회 사 무 국 장	
8	위 원	이 준 영	보 건 소 장	

#### ■ 의결방법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
(※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7조)

#### ■ 심사방법 : 심사기준의 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의 대상 및 규모 결정

#### ■ 심사기준

구 분	지 급 요 건	평점기준	비 고
필수요건	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기여도	유, 무	반드시 충족해야 함
	② 제도개선 효과	유, 무	
선택요건	③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	유, 무	
	④ 지출절약(수입증대) 내용의 창의성	유, 무	

- 성과금 대상 : 평점요소(①~④)별로 검정하여 모두 해당하거나 ①, ③, ④에 해당하는 경우
- 격려금 대상 : 평점요소 ③, ④가 다소 미흡한 경우라도 지출절약(수입증대) 성과가 명백한 경우

- 예산성과금 지급 제외대상(※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제4항)
  -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나 그 밖에 **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지급 불가**  
(※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제4항)
  - 다만,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수입증대 기여도가 큰 부분을 적용하여 지급 (※서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)
- 성과금 지급기준(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)

구 분	지출절약			수입증대
	인건비	경상적경비	주요사업비	
성과금 규모	감축인원 인건비 1년분	절약액의 50%	절약액의 10%	수입증대액의 10%
지급한도	1인당 2천만원 이내, 주요사업비 건당 1억원 이내 ※ 단, 지출절약 효과가 큰 경우 30% 범위내 가산지급 가능			

※격려금은 별도기준 없음

## 04. 소 요 예 산

■ 예산성과금 예산액 : 7,000천원

- 예산과목 : 건전재정운영, 효율적인재정운영, 재정관리제도운영, 포상금, 포상금  
※ (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) 예산성과금 재원이 없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 지급 가능

## 05. 행 정 사 항

■ 정책기획담당관 : 예산성과금 지급

-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선정·통보 : 2016. 4. 26.(예정)
- 예산성과금 지급 : 2016. 5월 중

■ 예산성과금 신청부서 : 신청대상 공무원은 위원회 개최시 사무실 대기(※참석요청 대비)

- 붙임 : 1. 예산성과금 심사자료 1부(신청서, 증빙자료 별첨)  
2.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. 끝.